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108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안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종훈

피고A

변론 종결2021. 11. 10.

판결 선고2021. 12. 8.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8. 11. 12. 접수 제11332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동생이고, C은 피고와 B의 아버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이 사망하면서 피고와 B이 2016. 1.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8. 1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 명의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8. 11. 12. 접수 제11332호로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1. 2. 7.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득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이 채권을 '이 사건 취득세채권'이라 한다).1)

취득세(부동산)	토지+건물 건물 E호 유보기간 내 이전	2019. 12. 31.	11,391,660
토지+건물 건물 F호 유보기간 내 이전	12,620,130		
합계	24,011,790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존재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B은 이를 비롯한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는 식당을, B은 닭 판매업을 각자 운영하면서 서로 거래를 해왔다. 그러다가 B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가 빌려준 돈이 2억 원 이상이 되어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그 명의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게다가 이 사건 취득세채권은 위 증여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참조).

2) B에 대한 체납/결손 리스트(갑 제2호증)상 이 사건 취득세채권의 최초납기일이 2019. 12. 31.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의 시점이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취득세채권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건물 E호, F호(이하 'I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다. B은 I동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6. 5. 23. 취득하였다.

②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2)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3)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③ 그런데 I동 부동산은 특례법상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고는 2016. 5. 23. 특례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을 근거로 B이 납부하여야 할 I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었다. 그러나 I동 부동산이 그 취득일인 2016. 5. 23.로부터 5년 이내인 2019. 10. 4. J, K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원고는 특례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당초 감면하였던 취득세의 추징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 취득세채권인 것이다. 앞서 본 B에 대한 체납/결손 리스트에도 물건표시 항목에 '유보기간 내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감면 후 추징'의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④ 한편 I동 부동산에는 2017. 12. 11.자로 주식회사 L 명의의 가압류등기, 2018. 4. 30.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압류등기, 2018. 11. 2.자로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 2019. 3. 4.자로 주식회사 M 명의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B이 2016. 5월 및 6월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다) 등이 마쳐진 상태였다. 그러다가 주식회사 L의 신청으로 2018. 5. 3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N)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0. 4. 매각되었다.

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I동 부동산 취득이라는 이 사건 취득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 특례법에 따라 취득세 일부가 감면된

상태였을 뿐, 5년 이내의 매각 여하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다시 감면된 취득세를 징수하는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각종 압류 등 내역과 2018. 5. 30. 이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㉔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즉 부동산 매각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취득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I동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을 전후한 B의 카드대금 연체내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B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B의 악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기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 명의 지분의 이전원인이 증여계약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지분을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B이 2018. 11. 9.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이상, B이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선의의 수익자 여부

1) 피고는, 사업상으로는 B와 엄연히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B이 장래 강제집행을 당하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종전에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는 받지 못할 형편이었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B의 관계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8. 11. 12. 접수 제11332호로 마친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원식

별지

1) 취득세 외에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민세도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합계액이 취득세에 비해

상당히 소액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 관련 주장도 주로 취득세 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취득세 부분만 살핀다.

2)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도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3) I동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부과내역 프로그램 화면상으로도 납기일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째인 2016. 7. 22.로 되어 있다